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94
----------	------

발의연월일 : 2017. 8. 4.

발 의 자 : 송희경 · 윤한홍 · 유민봉
나경원 · 박찬우 · 김석기
조훈현 · 조경태 · 윤재옥
김규환 · 문진국 · 장석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가짜뉴스와 함께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 또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 나아가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가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왜곡보도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사 제재 수단이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허위·왜곡보도의 확산 속도에 비해 언론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신속·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33조 신설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언론은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의 보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받아들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의 결정

제14조제1항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개월이”를 “1년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시정권고”를 “시정권고 등”으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시정명령 요청)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사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언론사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에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

1의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언론은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의 보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고충처리인)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u>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⑤ (생략)</p>	<p>제6조(고충처리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받아들여야 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③ ~ ⑪ (생략)</p>	<p>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의 결정</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p>
<p>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p>	<p>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p>

제5절 시정권고

<신 설>

제34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3조(시정명령 요청)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사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언론사등에 그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에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2.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1의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충처리인
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

1의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
정하지 아니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